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21. 08. 31. (화)	담당자	권주리 사무국장 상담원	
서울시 영등포구			http://www.teen-up.com	
전 화	02-6348-1318	전 송	02-2690-1255	teen-up.com@daum.net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는커녕 피의자로 조사하고, 범죄자 취급한 수사기관(수사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2021년 8월 30일(월),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근거한 피해자로서 보호하지 않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상 피의자로 조사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범죄자 취급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한 0000경찰청 생활질서과 00000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과 통합지원서비스제공, 사이버포래상담원 양성과 지속교육, 아동·청소년/인터넷/성착취(성매매 등) 관련 이슈 생산 및 연대활동, 아동·청소년 성착취(성매매 등) 방지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연대 등 성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사이버포래상담사업을 여성가족부로부터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부터 개정된 ‘아청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되었다면 자발/강제 구별없이 모두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신고

자체를 막고 성매수자와의 합의를 중개하거나¹⁾, 함정수사 등 단속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였음에도 보호하지 않고 피의자로 조사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이번 사건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인권침해이며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OOOO경찰청 생활질서과 OOOOO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2021. 8. 30.)

널리 알려주시고 본 진정을 통해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잘못된 수사기관의 인식과 수사관행이 명백히 드러나고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사건경과

1. 2021년 6월, 피해 아동·청소년(만 17세)은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알선자에 의한 성매매 영업에 이용당하던 중 성매수자로 위장해 잠입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문 밖에 대기 중이던 경찰들이 이어 피해 아동·청소년이 있던 방으로 들어왔고, 경찰들이 문 앞을 막고 뒤돌아서 있는 중에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옷을 갈아입게 한 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당시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환복을 하게 되어 너무 두렵고 놀란 나머지 과호흡 증세와 함께 몸이 떨리기 시작했으나 경찰은 이를 방치하다 증세가 심각해지자 그제서야 상비한 약을 복용하게 한 후 진술서를 마저 작성시켰다. 그 과정에서 대기 중이던 또 다른 성매수자를 입장시켜 “애 미성년자인거 알고 있었냐, 오늘 했으면 아동한테 한 거다. 가정 있지 않냐, 안 한 게 다행이고 훈방조치 될 거다, 진술서만 쓰고 가라” 고 하였다.

1) 2021. 5. 11. 서울 해화경찰서 고소·고발 건 보도자료(십대여성인권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282번 참조)

2. 진술서를 작성한 후 대부분 성인인 다른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진술서를 쓰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훈방조치 하였지만, 경찰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데리고 인근 지구대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도 긴 시간 대기하도록 하다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실거주지(지방 소도시)로 다시 이동하였다. 이미 심야 시간이었지만 경찰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보호자를 이동하던 차량에 태워서 함께 실거주지(지방 소도시) 경찰서로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은 불안증세가 심각해져 다시 구토하였다.

3. 피해 아동·청소년은 본인의 성매매 피해 내용을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수치스러워 조사 시 보호자의 동석을 거부했지만 경찰은 보호자가 당연히 동석해야 한다면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강요했고, 어쩔 수 없이 피해 아동·청소년은 보호자 동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4. 새벽 1시가 넘어 시작된 경찰조사는 피해 아동·청소년을 ‘아청법’ 상 피해자가 아니라 ‘성매매 처벌법’ 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고,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조사 종료하였다.

5. 십대여성인권센터는 2021년 7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명단이 통보된 본 사건의 피해 아동·청소년을 상담하던 중, 피해 아동·청소년이 실제 조사는 ‘성매매 처벌법’ 상 ‘성매매 행위자’로 피의자 조사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기관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 변호인(김병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도)을 선임하여 수사기록을 신청, 확인한 결과,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기는커녕 실제로 피의자 신문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심각한 인권침해가 상당히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변호인이 0000경찰청 생활질서과 000000에 적용 법률이 잘못되었음을 제기하였으나 0000경찰청 생활질서과 000000은 개정된 ‘아청법’ 내용에 무지한 상태로 여전히 피해 아동·청소년을 피의자로 수사한 것이 적법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6. 수사기관(수사관)이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집행함에 있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법률이 권한을 주었기 때문이므로 수사기관은 반드시 법의 내용을 준수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아청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지 이

미 9개월이 넘는 현재, 수사기관이 법률 개정을 알지 못하여 법률을 잘못 적용한 법 집행은 모두 불법행위이며, 피해자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은 명백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이다. 이에 본 센터는 이러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0000경찰청 생활질서과 00000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었다.

○ 진정내용

2021년 8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0000경찰청 생활질서과 00000의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6의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의 피해자가된 아동·청소년(제13조 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피해 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조력을 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본다.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9.>

첫째, 2020년 11월 20일 개정된 ‘아청법’의 시행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하나 0000경찰청 생활질서과 00000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 행위자’로 피의자 조사해 범죄자 취급하며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아청법’ 제2조 6의2, 제38조 위반)

둘째, 피해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를 보호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의사를 밝혔음에도 0000경찰청 생활질서과 00000이 보호자에게 이를 알렸고, 피해 아동·청소년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오랜 시간 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까지 심야 시간(새벽 1시부터 새벽 4시 넘어 까지)에 조사를 하였다.(‘아청법’ 제25조 위반)

셋째, 피해 아동·청소년이 보호자가 참석한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등 다른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킨 후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동석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고, 보호자를 동석시켜 조사를 받도록 했다. (‘아청법’ 제28조 위반)

넷째, 0000경찰청 생활질서과 00000은 ‘성매매 처벌법’상 피의자로 조사한 피해 아동·청소년을 2021. 7. 1 (목) 십대여성인권센터에 ‘아청법’상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처벌법’상 ‘성매매 행위자’로 피의자신분을 유지하였다.(‘아청법’ 제38조 위반)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래와 같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아 래-

① 체포 당시 간단한 진술서만을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가 받아야 할 당연한 보호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수인의 경찰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경찰이 불러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를 두렵게 하였고 그 결과 약을 복용하고 구토 증세가 나타나게 하였다.

② 진술서를 작성한 후 바로 귀가조치나 보호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관할 지구대에 긴 시간 머물게 하여 사실상 불처벌대상을 구속하였다.

③ 피해자가 지방 소도시에서 가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야에 피해자를 태우고 지방 소도시로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자에게 불안 증상을 유발시켰다.

④ 피해자는 ‘아청법’상 피해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경우, 온 몸을 떨면서 과호흡 증상을 보이고 본인 스스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한다고 말한바 경찰이 직권으로 ‘아청법’ 제 25조 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준용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담당수사관은 관련 법률을 적용하지 않았고 ‘성매매 처벌법’상 피의자 조사를 심야까지 강행했고, 불필요한 부분까지 신문하면서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였다.

⑤ 피해자가 보호자의 동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기관에 연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동석이 필요하다는 점만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한 후 피해자가 알려지기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보호자에게 알려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였다.

- 이 외에도 피해자의 지위가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또는 성인의 경우 일 지라도 단속 후,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비아냥댄 경찰의 발언은 부적절한 언행이었으며, 문 앞을 가로막는 것만으로도 도주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경찰이 한 공간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한 행태는 피해자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행위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빼앗은 휴대폰으로 다음 손님(성매수자)을 받은 경찰은 성매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음에도 정작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성매수자는 진술서만 받은 후 귀가 조치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는 이번 사건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인권침해이며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OOOO경찰청 생활질서과 OOOOO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본 진정을 통해 성착취(성매매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잘못된 수사기관의 인식과 수사관행이 명백히 드러나고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

십대여성인권센터